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1993년 5월 25일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5월 17일 남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3년 5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1993년 5월 24일) 상정
-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1993년 5월 25일)
 - 질의, 토론
 - 수정 제안 설명
 -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총무과장 허병태)

가. 제안 이유

- 신 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긴축 재정 운영과 관련 예산 절감
-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정 예산의 재검토
- 여건 변동 등 필수적 경비와 시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 경비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나. 주요 골자

○ 총괄 예산 규모

71,557,738천원

일반회계 68,104,075천원

특별회계 3,453,663천원

○ 총무위원회 소관(총괄 예산액)

(단위 : 천원)

구 分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회 추경안)	증감율 (%)	비 고
세 입	계	51,435,936	45,980,304	5,455,632	11.8
	일반회계	51,247,236	45,791,604	5,455,632	11.9
	특별회계	188,700	188,700	0	0
세 출	계	24,680,632	23,704,266	976,366	4.1
	일반회계	24,491,932	23,515,566	976,366	4.1
	특별회계	188,700	188,700	0	0

○ 총괄(세입부문)

(단위:천원)

구 分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교 증△감	비 고
총 계	51,435,936	45,980,304	5,455,632	
기획감사실	23,879,100	22,795,005	1,084,095	
문화공보실	17,055	17,055	0	
총 무 국	27,539,781	23,168,244	4,371,537	

○ 총괄(세출부문)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총 계	24,680,632	23,704,266	976,366	
기획감사실	3,129,588	2,128,628	1,000,960	
문화공보실	277,957	269,079	8,878	
총무국	10,121,943	10,036,146	85,797	
동 소 관	11,151,144	11,270,413	△119,269	

3. 검토 내역

○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내역중 세입 예산 분야는 남구 전체의 68,104,075천원 중 총무위원회 분야가 51,435,936천원으로 전체의 1.3%이며 세출 분야는 남구 전체의 71,557,738천원중 총무위원회 분야가 24,680,632천원으로 전체의 2.9%임.

○ 총괄적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분석해 보면

- 예산 운용상의 비효율적 낭비 요소를 제거하므로써 재정의 건전성에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 재원의 예산 절약을 위하여 불용액을 필수 경비에 착감 전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 세입변동 묘인의 분석으로 추가 세입의 포착을 성실히 가늠하여 예산에 반영 토록 재원사장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 따라서 총무위원회 추경예산은 세입이 5,455,632천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0.8% 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증가 1,156,950천원으로 2%가 증가되었음.

- 증가요인중 제지출금인 국고 및 시비 1,084,095천원 반환금이 92년도에 집행
되지 못하고 93년도로 이월되어 세입으로 책정된 바 92년도 미집행에 대한
원인이 분석되어져야 하겠고, 예비비가 당초 408,439천원에서 추경요구액
492,326천원으로 83,887천원이 증가된 이유가 충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 이를 추경 본래의 목적 취지에서 보면 본 추경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는 정부의 신 경제 100일 계획상의 공공부문 예산 절약 계획에 따른 정부
의 지침에 의거 재편성된 것으로 각종 낭비 요인 및 절약 가능한 부분은 과감
히 절감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이를 이후 계속 발전시킴으로
써 향후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볼 수도 있겠으나 부분적으로는 각
부서의 특성 및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 또는 자율성 등 장기적인 안목을 다소
살리지 못하고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에만 치우쳐 일정액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한듯한 부분이 다소 발견되는 점은 차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전반적으로 국가의 진축 재정의지에 적극 동참하고 내실있고 짜임새 있게 조정
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배종환 위원	기획 감사실장 정석조	예비비가 93년 본예산에 4억200만원이 기 편성 되어 이번 추경에 8,400 여만원이 증가되어 편성 된 이유? 또한 예비비의 편성 지침 또는 기준이 있는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 로 종전에는 예산의 1%를 계상 토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예산에 계상 토록 되어 있음.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에 증액 계출한 예비비 8,400여만원을 전액 삭감해도 관계가 없는지? · 예비비 8,400여만원을 삭감해서 각동 주민숙원 사업 시설비에 투자할 용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없지만 예전과 같이 예산의 1% 선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 계상하였던 것임. ·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
임종하 위원	총무과장 허병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마을 방역비가 1기동이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 방역비의 쓰임새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예산이 부족하여 계상을 못하였음. · 인건비 및 의약품, 기타 부대비 도 사용함.
이태홍 간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무소 예비군 중대에서 사용하는 공과금은 어디서 부담하는지? · 동 예비군 중대의 공과금을 자체 부담토록 할 용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동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음. · 검토해 보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과안리 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예산액은? ·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 4-5천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금액은 지금 파악되지 않아 조급후 개별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이번 추경에 7천393만5천원을 요구했는데 청소년 선도 근무자의 급식비, 개장 행사, 질서 계도 요원 인건비, 간호 보조원 인건비 사장 관리등에 쓰여짐.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문덕복 위원	세무1과장 추찬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세 등 고지서 전달 우편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보통 통장이 전달하는데 우편료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를 하여 고지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과 인편으로 교부하는 방법이 있음.
배종환 위원	시민과장 한옥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92년과 '93년도를 비교하여 남구 전체 우편료 현황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93년도 예산액은 9,9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세무1과 고지서 전달용으로 추가 계상되어 있음.
이태홍 간사	세무2과장 박한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서 76페이지 도로 하천 무단 점용 수수료가 50% 절감 편성된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 측량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불분명한 것이 발견되는데 다시 측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50% 절감해도 부족하지 않음.
배종환 위원	문화공보 실장 (대리: 문화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문 구독료가 1,600만 원이 추가 계상된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서울신문 1,410부가 구독되는데 신문 가격이 1부에 5,000 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 소요 금액임.
박한성 위원	재무과장 유용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직 공무원 재정 보험 보험료 14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도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 사고시 변상 책임은 담당 공무원이 지지만 공무원 재정 보험 조례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 보험료를 예산으로 부담 토록 되어 있음. 회계직 공무원 1인당 4,000원의 수수료가 지불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추경의 삭감 총액은 얼마이며 삭감기준은 자체 결정인지 상부의 지침이 있었는지? 구청 쓰레기 소각장에 1,8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치 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공공부문 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음. 정부의 고통 분담 노력에 동참하는 예산 편성임. 선거관리위원회 뒷쪽의 기존 쓰레기 소각장을 다시 만드는 것임. 예산 승인을 해주면 곧 시행할 것임.

5.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5월 25일 배종환 위원 발의

나. 찬성자 : 이태홍 위원

다. 수정 이유

예비비에 증액 계상된 금액을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증액 편성

라. 주요 글자

이번 추경안에 증액 편성된 83,887천원을 삭감하고 각동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지역개발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함.

마. 질의 답변 : 「없음」

바. 토론 : 「없음」

6. 심사 결과 :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